
第81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5年10月27日(金) 午前10時

場所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및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改選審議의件
 2.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查및調查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5年度議會事務處所管行政事務監查計劃書採擇의件
 4. 1995年度行政事務監查計劃書採擇의件(綜合)
-

審査된案件

1.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및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改選審議의件 ... 1면
 2.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查및調查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鍾來 議員 外 1人 發議) ... 3면
 3. 1995年度議會事務處所管行政事務監查計劃書採擇의件 ... 12면
 4. 1995年度行政事務監查計劃書採擇의件(綜合) ... 13면
-

(10時 42分 開議)

○委員長代理 金洪奎;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
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第4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
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및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改選審

議의件

○委員長代理 金洪奎; 議事日程 第1項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 및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改選 審議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 委員審議는 지난 8月 25日 第79回 臨時會 第3次 運營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第79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에서 原案대로 議決하였으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審議는 지난 10月 17日 第81回 臨時會 第2次 運營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第81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原案대로 議決하였으나, 該當 委員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特別委員會의 委員이 변경되어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第7條第2項에 의거 審議를 하게 된 것입니다.

議長이 추천한 各 特別委員會 改選 委員의 명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議事日程 第1項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 및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改選 審議의 件을 原案대로 각각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뒤에 실음)
.....

2.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鍾來 議員 外 1人 發議)

(10時 44分)

○委員長代理 金洪奎;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發議者를 대표하여 金鍾來 委員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來 委員; 안녕하십니까? 國民會議 所屬 金鍾來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同 條例案은 地方自治法施行令이 95年 7月 1日字로 改正 公布됨에 따라 關聯條項을 일부 정비하여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实效性 확보를 위해 證人出席 및 證言 등에 관한 同法施行令 規定上의 米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主要骨子는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時 出席要求를 받은 證人이 正當한 이유 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을 거부한 때에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하게 하고, 過怠料 賦課節次는 議長의 通告에 의하여 市長이 賦課하고 그 結果를 議長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洪奎; 金鍾來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梁在大; 안녕하세요? 專門委員 梁在大입니다.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提案說明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檢討意見を 말씀드리겠습니다.

同 條例案은 94年 3月 16日 地方自治法 改正 당시에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위하여 出席要求를 받은 證人이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司法 第36條第5項에 根據條項을 마련하였으며, 95年 7月 1日 同法施行令 改正으로 위 過怠料는 당해 地方議會 議長의 通告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賦課하되, 過怠料 賦課 基準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上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出席要求를 받은 證人이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을 하지 아니하거나 證言을 거부하는 事例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의 实效性을 확보하고 議政活動을 효율적으로 遂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參考로 國會의 경우도 國政監査 및 調査時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證人, 報告 또는 書類提出을 거부한 者, 宣誓 또는 證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人은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同 條例의 改正으로 今年度 第13回 定期會時 行政事務監査를 보다 더 내실있게 하여 市民의 代表機關으로서의 執行機關에 대한 감시·統制機能을 원활히 遂行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洪奎; 金鍾來 委員님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本 條例案에 대한 質疑 및 討論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意見이 있으신 委員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元植 委員; 過怠料賦課의 主體는 어디입니까?

○專門委員 梁在大; 市長입니다.

○禹元植 委員; 그러면 500萬인 이하인데, 事案에 따라서 다를텐데 事案을 判定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專門委員 梁在大; 그것도 市長이 합니다.

○禹元植 委員; 市長한테 全權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萬원 이하, 어떻게 하면 市長한테 全權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議會의 判斷 같은 것이 이쪽에서 告發 비슷하게 市長한테 얘기는 할 수 있으나 500萬원 이하로 해 놓으면 10萬원을 한 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별로 實效性이 없다고 判斷되고, 國會의 경우도 500萬원 이하의 罰金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500萬원 이하 300萬원 이상 이렇게 規定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專門委員 梁在大; 國會의 경우는 500萬원 罰金으로 되어 있거든요.

○梁敬淑 委員; 國會는 1年 이하의 懲役이라는.....

○禹元植 委員; 1年 이하의 懲役이라는 것, 그리고 檢察에다 告發을 國會에서 해서 裁判을 받는 過程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市長한테 얘기해서 市長의 자의적인 判斷에 따라 過怠料의 額數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規定自體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國會가 500萬원 이하의 罰金이기 때문

에 그것을 넘어가기는 어렵고, 市長의 裁量權을 制限하기 위해서 300萬원 이상 이런 規定을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洪奎; 禹元植 委員님께서 500萬원 이하 300萬원 이상으로 하자는 提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委員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仁回 委員; 宋仁回 委員입니다. 新設改正案 第9條第2項을 보면 第1項의 過怠料는 議長의 通告에 의하여 市長이 賦課하고 그 결과를 議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떨습니까? 議長의 通告라는 것이 市長한테 過怠料의 賦課金額이나 이런 것을 規定을 하고, 또 市長은 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議長의 通報內容에 羈束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專門委員 檢討한 바가 있습니까?

○專門委員 梁在大; 그것은 지금 施行令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施行令에 根據를 해서 條例를 만든 것입니다.

○宋仁回 委員; 아니, 내 얘기는 지금 第9條第2項 改正案 보세요. 議長의 通告에 의하여 市長이 賦課하고 그 결과를 議長에게 通知하게 되어 있죠? 議長이 通告할 적에 過怠料의 金額을 정하는 거예요?

○專門委員 梁在大; 지금 過怠料 賦課權者는 市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仁回 委員; 市長인데, 第9條第2項에 市長이 실질적으로 우리 議會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런 條項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金鍾來 委員; 그 內容이 뭐냐면 過怠料는 議長의 通告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金額이, 지금 우리 宋仁回 委員님 말씀은 議長

이 過怠料 金額을 정해서 市長에게 통고해서 市長이 賦課하느냐 이 소리죠?

○宋仁回 委員; 그렇죠. 그리고 市長은 議長의 通報內容에 실질적으로 羈束이 되는 것인지, 變更하거나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일이 없이 말입니다.

○專門委員 梁在大; 지금 自治法이나 施行令上의 規定은 過怠料賦課는, 모든 過怠料가 다 마찬가지로인데요, 過怠料 賦課權限이 自治團體長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해서 가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힘들고, 그것은 市長이 裁量을 가지고 賦課를 해야 될 그런 事項인 것 같습니다.

○金永姬 委員; 여기 內容에 보면 第9條2項에 市長이 賦課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金額을 통보를 하면 市長이 얼마를 賦課할 것이냐 하는 것은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이다, 여기 지금 이런 內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施行規定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500에서 300이라고 했을 때에 問題點도 있긴 있을 것 같으네요, 500萬원 이하로 했을 경우와 下限線을 300으로 두는 것인데 輕重에 따라서 300이 안 될 경우에도 300이상을 줘야하는 問題가 있으면 이것은 法的으로 問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500萬원 이하라는 것으로 두고, 施行規定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施行規則이 나올 것 아닙니까?

○專門委員 梁在大; 施行規則은 執行部에서 마련하고 있죠.

○禹元植 委員; 이것은 輕重의 問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內容自體가 出席拒否, 證言拒否거든요, 그러니까 證言內容이 輕하다 重하다. 아니면 出席理由가 輕하다 重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딱 박혀있는 것이 정당한 事由없이 出席을 거부하거나 證言을 거부할 경우, 이것은 議會의 位相에 관련된 問題

죠.

그래서 輕하고 重하고의 問題는 아니고, 저쪽에서 議會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內容이기 때문에 位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法 自體가 지금 施行令이 모든 權限이 市長한테 가 있기 때문에 市長의 裁量權을 제한한다는 側面에서 下限線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洪奎; 洪樂元 委員님 말씀하세요.

○洪樂元 委員; 지금 禹元植 委員님 말씀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證人에 대한 罰金의 金額을 갖다 일단 암시를 주는 部分인데 실지로 이것이 500萬원 以下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다 下限線까지 얼마 이렇게 정한다면 그 證人の 立場에서 생각할 때 최소한도 얼마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500萬원이라는 그것이 以下로 했을 때는 證人の 立場에서 생각할 때 아, 내가 證人을 거부했을 때는 한 500萬원 정도 받을 것이다라는, 오히려 金額을 갖다 市長이 決定할 때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證人도 정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事例가 있을 것이거든요, 피치 못할 事由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꼭 下限線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禹元植 委員; 法에 있어서도 法律에서 處罰條項을 보면 별로 重要하지 않은 事業은 대개 몇 年 以下の 懲役に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處罰을 強化시킬 때는 몇 年 以下, 몇 年 以上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強化된 條項입니다. 이것은 500萬원 以下の 過怠料를 賦課한다고 하면 500萬원 정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證言拒否해 놓고 市

長한테 가서 사정해서 한 10萬원으로 내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도저히 議會에서는 方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議會에 안 나가도 市長한테 잘 보이면 깎을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下限線을 두자고 하는 것은 이것을 強化시키자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市議會의 位相을 強化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行政事務監査할 때 證人들에 대한 僞證이랄지, 아니면 證言拒否랄지 이런 것에 대한 處罰規定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行政事務監査가 實效性을 잘 못 거두는 이런 側面이 지금까지 각 監査에서 계속 指摘되어 왔는데 이왕에 정할 것이면 가능한 선에서 強化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洪奎; 지금 방금 禹元植 委員님과 洪樂元 委員님, 또 金永姬 委員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300萬원에서 500萬원 以下다 하는 것은 깎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萬원 以下라면 차라리 100萬원 以上 500萬원 以下 하는 것이 輕重에 차이점을 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案을 내 놓으셨습시다만, 예를 들어서 上限線을 두지 말자는 案이 있고, 또 最下限線을 두자는 이런 委員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金永姬 委員님, 아까 下限線을 두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維持되는 것입니까?

○洪樂元 委員; 저하고 같은 意思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過怠料 賦課 그 자체에 意義가 있는 것이지, 證人이 證人出席要求를 받아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어떤 過怠料를 制裁를 받는다는 어떤 意味가 되는 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市長이 過怠料를 賦課할 때 어

면 裁量權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洪奎; 그러면 우리 金鍾來 委員님께서 提案說明을 하신 분이시니까 金鍾來 委員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金鍾來 委員; 저는 禹元植 委員님에 대한 同意發言을 드리 고자 합니다.

第9條第1項에 보면, 拒否內容이 正當한 이유없이 또는 證言을 거부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거든요, 굉장히 制限的입니다. 그래서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고 했는데, 또 第2項에 역시 보면, 議長이 通報權限만 있지 사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까 拘束力은 전혀 없고 市長한테 委任한 事項입니다.

그래서 이런 部分이 아까 우리 委員會에 대한 位相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實質的으로 여기에서 證言拒否를 해도 이렇게 500萬원 以下로 예를 들어서 包括的으로 잡아왔을 때는 그 實效性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實效性을 強化시키는 意味도 있고, 또 僞證한 部分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實質的으로 우리 議會에서 僞證한 분한테 處罰을 가할 수 있는 部分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強化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意味에서 500萬원 以下로 예를 들어서 上限線을 정했습니다만 下限線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證言할 수 있는 사람들이 證言을 거부하지 못하는 意味도 있고, 또 우리 議員들에 대한 位相 部分도 있기 때문에 禹元植 委員의 提議대로 300萬원 以上 500萬원 以下로 過怠料를 賦課한다라고 정했으면 하는 意思입니다.

이상입니다.

○宋仁回 委員; 意見調律을 위해서 한 20分間 停會를 했으면

종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洪奎; 잠시 2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1時 01分 會議中止)

(11時 14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金洪奎; 자리를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
員이 되었으므로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金鍾來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來 委員; 修正動議案을 내겠습니다.

第9條 過怠料 賦課 第1項에서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위
하여 出席要求를 받은 證人이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
니하거나 證言을 거부한 때에는 500萬원 以下の 過怠料를 賦
課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萬원 以上 500萬원 以下の
過怠料를 賦課한다"라고 修正動議案을 提出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洪奎; 金鍾來 委員님의 修正動議案에 대해서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修正動議案으로 可決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修正動議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金永姬 委員; 委員長이 整理해서 다시 한 번 읽으세요.

○委員長代理 金洪奎;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를 위하여 出席
要求를 받은 證人이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을 거부한 때에는 300萬원 以上 500萬원 以下の 過怠料

를 賦課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異議 없으시면 修正動議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3. 1995年度議會事務處所管行政事務監查計劃書採擇의件

(11時 17分)

○委員長代理 金洪奎; 議事日程 第3項 1995年度 議會事務處所管 行政事務監查計劃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내지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면, 監查는 每年 定期會議 會期 內에 施行하고 그 期間을 10日 以內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第13回 定期會에서는 市政質問을 3日間 하게 됨에 따라 行政事務監查 期間을 9日로 調整하여 實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今年度 第13回 定期會時 行政事務監查 期間은 11月 21日부터 11月 29日까지 9日間 實施하기로 하고, 第81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95年 10月 16日)에서 決定되어 오늘 運營委員會所管인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에 대한 行政事務監查計劃書を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參考로 議會事務處에 대한 監查日程은 11月 25日로 1日間 實施할 豫定입니다. 委員님께서는 書類 또는 資料要求事項을 別지1호 서식인 資料提出要求目錄에 기재하신 후 95年 11月 4日까지 委員長에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查計劃書에 대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항 1995年度 議會事務處所管 行政事務

監査計劃書 採擇의 件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1995年度議會事務處所管行政事務監査計劃書

(뒤에 실음)
.....

4.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採擇의件(綜合)

(11時 19分)

○委員長代理 金洪奎; 議事日程 第4項 1995年度 서울特別市 行政事務監査計劃書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거, 行政事務監査計劃書를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作成 採擇한 후,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行政事務監査를 施行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議會 運營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作成 議決한 行政事務監査計劃書를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 第5條第1項第1號 科目의 規定에 의거, 運營委員會에서 일괄수합 정리하여 採擇한 후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行政事務監査를 實施코자 합니다.

參考로 監査期間은 11月 21日부터 29日까지 9日間이고, 監査 委員의 편성은 별도의 特別委員會를 구성하지 않고 所管 常任委員會別 所屬 委員 全員이 監査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事務補助職員으로서는 事務處 全職員이 해당 분야별로 支援토록 하겠습니다.

監査對象機關으로는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3第1項第1號, 第2號 및 第4號 規定에 의하여 所管常任委員會에서 선정한 80個 機關과 同法施行令 第17條의3第1項第3號, 第5號 및 第6號 規定에 의하여 本會議 議決對象機關인 서울特別市 教育廳 및 市政開發研究院 等 15個 機關으로 總 95個 機關이 되겠습니다.

기타 委員會別 監査日程 및 場所, 監査要領 및 資料提出 方法 等 자세한 內容은 미리 배부해 드린 監査計劃案을 參考하여 주시고, 該當 常任委員會 議決을 존중하여 議事日程 第4項 1995年度 서울特別市 行政事務監査計劃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뒤에 실음)
.....

○委員長代理 金洪奎; 마쁘신 중에도 會議에 참석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宋仁回 委員 말씀해 주십시오.

○宋仁回 委員; 宋仁回 委員입니다.

얼마 전에 常任委員會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95年

度 豫算 中에 事務室 賃借料가 소비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것을 不用額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事務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各 常任委員長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 討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問題에 대해서 두 가지 問題點을 指摘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事務室 問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협소한 議會事務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委員會, 또 政黨別, 또 執行部 事務室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原則이 없이 졸속적으로 그 돈을 豫算을 쓰기 위해서 그런 事務室 마련을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하나와, 두번째는 事務室 賃借를 위한 그런 일들이 運營委員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또 協議가 없이 進行이 된 데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委員長代理이신 金洪奎 幹事께서는 그 內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우리 運營委員들한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洪奎; 宋仁回 委員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긴급히 幹事 모임을 가졌습니다. 各 常任委員會 幹事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도 事務室 問題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 事務室에서 이 주위에 事務室을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적합한 事務室의 坪數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幹事들이 직접 여기저기 나누어서 이 주위에서 徒步 한 5分 거리, 議會事務室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한 5分 거리로 해서 알아본 結果, 실질적으로

事務室을 구하기는 참 힘이 들고, 어제 여기서 한 徒歩 7, 8 분 되는 거리에 事務室이 있어서 어제 議政課長을 그 쪽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한번 妥協을 해 보게끔 했는데 그 쪽 事務室 빈곳에서는 月貫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傳貫로 할 수 있도록 어제 協議次 보냈습니다.

그리고 消費性이라고 우리 宋仁回 委員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3期 때에 事務室에 대한 保證金에 대해서는 이미 豫算을 잡아서 준비를 한 事項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현재 우리 議會事務室로 보면 事務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事務室을 이 주위에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豫算編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不用額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든 현재 事務室도 필요하고 그래서 事務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宋仁回 委員; 그러면 運營委員들이 그런 것을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洪奎; 이미 事務室을 얻는다고 運營委員會에서 豫算까지도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運營委員會에서 이미 報告드린 바가 있습니다.

○宋仁回 委員; 그러면 進行되는 內容에 대해서는 運營委員들한테 수시 報告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洪奎; 그 동안 結果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어제는 급기야 幹事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게 되면 運營委員會에 다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姬 委員; 幹事 모임이라는 것은 運營委員會 幹事 모임을 한 것입니까, 常任委員會 幹事 모임을 한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洪奎; 各 常任委員會 幹事 모임을 했습니다.

○金永姬 委員; 幹事 모임은全體 모임을 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委員長代理 金洪奎; 선임간사만 했습니다.

○金永姬 委員; 그런데 그 豫算이 얼마되고, 規模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洪奎; 그 豫算은 20億원이 떨어졌습니다. 20億원 豫算을 잡아서 해 놓고 있는데 各 常任委別로 해서 議員 여러분들의 책상도 놓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중인데, 坪數도 커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이 주위에서는 연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어제 실질적으로 돌아 봤습니다.

저도 역시 돌아다녀 보고 어제 時間半 동안을 걸어다니면서 해맸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事務室 연기가 힘이 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 보고 온 데는 500坪 規模가 있는데 그 500坪에서는 月貫로 2억 오천몇백만원 保證金에 月貫 3,000萬원 이렇게 얘기를 해서 議政課長한테 얘기를 해서 議政課長이 어제 協議次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金永姬 委員; 네.

그리고 公的費用에 대해서 運營委員會에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公的費用이 어떻게 運營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洪奎; 公的費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油印物을 보셨듯이 議會事務處 監査 때 보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諸般的인 問題가 있으시면 懇談會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會議에 참석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 수고 많

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29分 散會)

○出席委員

金洙福 金洪奎 金鍾來

梁敬淑 吳廣烈 禹元植

鄭鎮宇 宋仁回 洪樂元

金永姬

○專門委員

梁在大